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7을 제2조의8로 하고, 제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2. 기획재정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외교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안전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여성가족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1. 국가정보원장
12. 관세청장

13. 검찰총장

14. 병무청장

15. 경찰청장

16. 해양경찰청장

제2조의8(중전의 제2조의 7) 중 “법 제2조의5제1항”을 “법 제2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법 제44조의2제1항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에서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란 별표 8의 농도기준 이하를 말한다.

별표 8의 제목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 (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을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과 농도기준 (제2조제5항, 제6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제1호의 (1군) 및 (2군) 표에 농도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 중 “최대거래량”을 “최대거래량 또는 농도기준”으로 한다.

농도기준
10%
50%
50%
50%
-
10%
50%
50%
50%
50%
50%
50%
50%
50%
15%
70%
100%
100%
40%
20%
50%
20%
20%
-
50%
50%
50%
50%
-
-

* 원료물질 복합제는 2군으로 본다

농도기준
50%
90%
90%
30%
90%
90%
9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는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의7(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 3. (생략)</u>	<u>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u> <u>1.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u> <u>2. 기획재정부장관</u> <u>3. 교육부장관</u> <u>4. 외교부장관</u> <u>5. 법무부장관</u> <u>6. 국방부장관</u> <u>7. 행정안전부장관</u> <u>8. 보건복지부장관</u> <u>9. 여성가족부장관</u> <u>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u> <u>11. 국가정보원장</u> <u>12. 관세청장</u> <u>13. 검찰총장</u> <u>14. 병무청장</u> <u>15. 경찰청장</u> <u>16. 해양경찰청장</u> <u>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u>
<u><신 설></u>	

<신 설>

육과 학교교육 연계)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이하 “학교교육”이라 한다)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의2(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서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일반음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u><신 설></u> ①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1.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②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u>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u>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란 <u>별표 8의 농도기준 이하를 말한다.</u> ② (종전의 제1항과 같음) ③ (종전의 제2항과 같음)
---	---